

#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5. 6. 30.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6. 14.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5. 6. 16.
- 다. 상정일자 : 제113회 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05. 6. 30)  
상정, 심사, 가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 가. 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우리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를 설치 운영한다.(안 제2조)

- 대표협의체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함.(안 제3조제1항)
  -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4) 구청장이 지역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안 제3조제2항)
  1.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함.(안 제4조제1항)
-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구의회의원 2인,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이 됨.(안 제4조제2항)
-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안 제4조제3항)
-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 및 보건업무 관련 팀장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안 제4조제5항)

-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안 제7조)
-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12조)
-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1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2005.3.31 법률제7428호)의 개정으로 2005.7.31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였으며,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4조에서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 및 보건업무 관련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동 조례(안)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 대두, 복지보건 분야의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설치하게 되었음. 향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지역의 다양한 공공민간 분야 복지 관련 주체들이 대표성을 갖고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 자원의 발굴 및 효율적 활용 체계 조성,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및 지역특성이 반영된 탄력적인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장) : “대표협의체”란 문구를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하였는가?
- 답변요지(김정호 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질의요지(이매숙 위원) :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촉대상은?
- 답변요지(김정호 사회복지과장) : 법제7조 2항에 나와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6. 심사결과 : 가결****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8. 기 타 : 없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6.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우리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안 제2조)

나. 대표협의체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함.

(안 제3조제1항)

-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4) 구청장이 지역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다.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안 제3조제2항)

1.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제 선정(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함.(안 제4조제1항)

마.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구청장,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구의원 2인,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이 됨.(안 제4조제2항)

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안 제4조제3항)

사.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 및 보건업무 관련 팀장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  
(안 제4조제5항)

아.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안 제7조)

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12조)

차.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16조)

###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나. 예산조치 : 2005년 추경에 반영예정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협 의 : 서울시 지침, 서울시 사회과-7659, 8740(2005.5.27)

마. 기 타

- (1) 입법예고 : 2005. 5. 20 ~ 2005. 6. 9 (입법예고결과 별첨)
-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③ 대표협의체는 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부구청장·생활복지국장·보건소장·구의원 2인·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 및 보건업무 관련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⑥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직원)**

-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 행위로 본다.

##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1. (제4조2항)위원구성 중 다음의 자 추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주민 및 수요자 대표	○부분반영 -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에 위원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음 * 동 조항 제4호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한 공익단체(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가능
★ 참여와자치를 위한 마포연대(김종호)	2. 위원의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인터넷 등에 공고	○부분반영 - 위원 위촉기준 및 선정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
★ 마포두레 생활협동조합(박홍섭)	3. (제7조)위원임기 -위원의 연임율 1차로 제한	○부분반영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
★ 마포청년회 (윤성일)		
★마포희망나눔지원단 (진상돈)	4. (제9조)간사 -유급직원 강제규정 및 공동간사제	○미반영 - 협의체사무실 및 예산 미확보로 유급직원 강제규정은 차후 검토사항임
	5. (제3조)기능 - 대표협의체의 기능 중 심의·건의 뿐만 아니라 의결권도 부여	○미반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토록 규정
	6. 회의의 횟수와 공개 -대표협의체 회의 월1회개최 -회의개최 7일전 안전 통지,회의자료 3일 이전 제출 -회의일시,장소,심의안전 인터넷 공개	○부분반영 -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규칙 제정시 적극 검토
	7. (제11조)회의록의 작성공개 -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록 등 회의관련 전반적인 사항 인터넷에 공개	○부분반영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8.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 연1회 이상 공청회 또는 활동보고회 개최	○부분반영 - 조례안 제14조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토록 규정
	9. (제8조)위원의 해촉 - 위원 해촉조항에 성실수행의 의무 규정삽입 - 위원은 협의체 회의에 성실 수행의 의무를 지니며 특별한 사유없이 1/2이상 결석시 위원들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 각 분야 대표성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퇴직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미반영 - 보건복지부 준칙안 준수
	10. 의결사항의 처리조항 삭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의결사항을 강행규정으로 함	○미반영 - 예산, 사업의 우선순위, 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음.
	11. 사무실의 설치규정 신설 - "협의체의 사무실은 마포구내에 둔다"는 규정신설	○미반영 - 안 제16조에 지원근거 규정되어 있으나 현 상황에서 강행규정은 시기상조
★대한노인회마포지회 (권영삼)	○경륜과 덕망이 있고 노인복지현장 체험이 풍부한 대한노인회마포지부 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 요청	○부분반영 - 위원회 구성시 참여하여 의견개진 기회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김성훈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준비과정, 위원구성, 조례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부분반영 - 관련법과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의 범위 안에서 적극 수렴